

『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3월 17일

나. 발 의 자 : 이명희, 김상조, 김수민, 김재상,
김춘남, 박교상, 이수태(7인)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3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3월 20일

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

2014년 3월 21일

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이 명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 농·수·축산물의 소비를

촉진시킴으로서 친환경 농·수·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
-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개정(안 제1조)
- 학교급식 친환경 농·수·축산물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(안 제2조제4호)
- 용어의 정의에 “친환경 농·수·축산물 수급체계” 신설 (안 제2조제6호)
- 지원대상에 어린이집 포함(안 제4조제3호)
- 지원방법에서 현물지원방법 개선(안 제5조제2항제1호)
-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변경 (안 제8조제2항제10호)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
- 해당부서 의견 :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
 -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할 경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우리지역 친환경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되나,
 - 급식경비 단가가 높아지면서 지방비의 부담이 증가되고, 급식 시행초기 친환경 농산물의 일시적인 수급조절이 요구되고 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“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은,

- 학교급식 여건의 변화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, 친환경 농·수·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서,
- 2013. 11. 11. 친환경 급식관련 경상북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며,
- 친환경 급식재료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등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급식재료의 공급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일부 증가가 예상되나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